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 · 1등 항해사 · 기관장 · 1등

기관사 · 운항장 · 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 (제22조제2항관련)

1.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크기 (총톤수)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5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3천톤 이상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1의2.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어선의 길이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24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선장	1년 이상
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	선장	2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80미터 이상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비고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

2. 기관장 · 1등 기관사

선박의 크기 (주기관 추진력)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년 이상

75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2년 이상(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 기관사	1년 이상
3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3년(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기관사	1년 이상

비고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3천 킬로와트 미만인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에 1등 기관사로 승선했을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 경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통신장(전파통신급에 한함)

선박의 크기(총톤수)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1만톤 이상	통신장	1년 이상
2만톤 미만		
2만톤 이상	통신장	2년 이상

4. 자동화선박의 선장·운항장·1등 운항사

선박의 크기(총톤수)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3천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 장	3년 이상[선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항해전문)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항장	3년 이상[운항장·1등 운항사(기관전문)·기관장·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 운항사	1년6월 이상[2등 운항사·2등 항해사·2등 기관사 이상의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 고

운항사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은 승무한 직무와 전문분야가 같아야 한다.

5. 수면비행선박의 선장·1등 항해사

선박의 종류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소형 수면비행선박	선 장	1년 이상
중형 수면비행선박	선 장	2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비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은 수면비행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말한다.